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304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김태호 · 박충권 · 조경태
엄태영 · 이양수 · 강명구
김성원 · 유용원 · 조승환
김종양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등).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지소”를 “보건지소, 병원선”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병원선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2.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3. 보건교육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 중 “보건지소”를 각각 “보건지소, 병원선”으로 한다.

제31조 중 “보건소·보건지소”를 “보건소·보건지소·병원선”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u>보건지소</u>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p> <p>2. · 3. (생략)</p> <p><u><신설></u></p> | <p>제2조(정의) ----- -----.</p> <p>1. ----- ----- ----- ----- -----<u>보건지소</u>, <u>병원선</u>----- -----.</p> <p>2. · 3. (현행과 같음)</p> <p><u>제13조의2(병원선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다.</u></p> <p><u>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u></p> |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치과 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2.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3. 보건교육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

보건지소, 병원선-----

-----보건지소, 병원선-----

-----.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

-----보
건소·보건지소·병원선-----

-----.